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  
**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

**성 북 구 의 회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49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25. 11. 20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2026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”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 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특별위원회 존속기간: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심사안건: 2026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
- 심사방법: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·답변,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

## 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제64조,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7조, 제38조